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사보고

1993. 8. 6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8월 2일

○ 회부일자 : 1993년 8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 93회 임시회

○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 8. 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청 총무과장 고 일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제 41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기관 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충청
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인의 종류 및 규격 (안 제2조 및 제3조)

○ 공인의 교부 및 등록, 재교부, 폐기 (안 제5조 및 제6조)

○ 공인의 관수방법 및 날인 (안 제10조 및 제11)

3. 검 토 의 견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관인 규칙에 의하여 시행해 왔으나, 사무관리규정 제41조(공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음.

이에따라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기적으로 늦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없 음 "

5. 토 른 요 지 :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 원 안 가 결 "

7. 소수 의견 요지 : " 없 음 "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조례안